

경기도 대표상징물 아이덴티티 디자인 가이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용수표지 표준 디자인 적용 매뉴얼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 소화전
Signage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기본법을 따른다. 법령 및 매뉴얼에 지정된 규격·표기를 준수하여 혼동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를 사용하여 인지성이 높도록 해야 한다.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설치 시에는 맨홀뚜껑 부근 15cm를 노란색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로 칠하여 인지성이 더욱 높도록 한다.

적용예



규격

- ❶ 맨홀 뚜껑
- ❷ 소음침하방지패드
- ❸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

지정컬러

황색: CMYK(0, 20, 100, 0)
적색: CMYK(0, 100, 100, 10)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 저수조
Signage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기본법을 따른다. 법령 및 매뉴얼에 지정된 규격·표기를 준수하여 혼동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를 사용하여 인지성이 높도록 해야 한다.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설치 시에는 맨홀뚜껑 부근 15cm를 노란색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로 칠하여 인지성이 더욱 높도록 한다.

적용예



규격

- ❶ 맨홀 뚜껑
- ❷ 소음침하방지패드
- ❸ 반사도료 또는 컬러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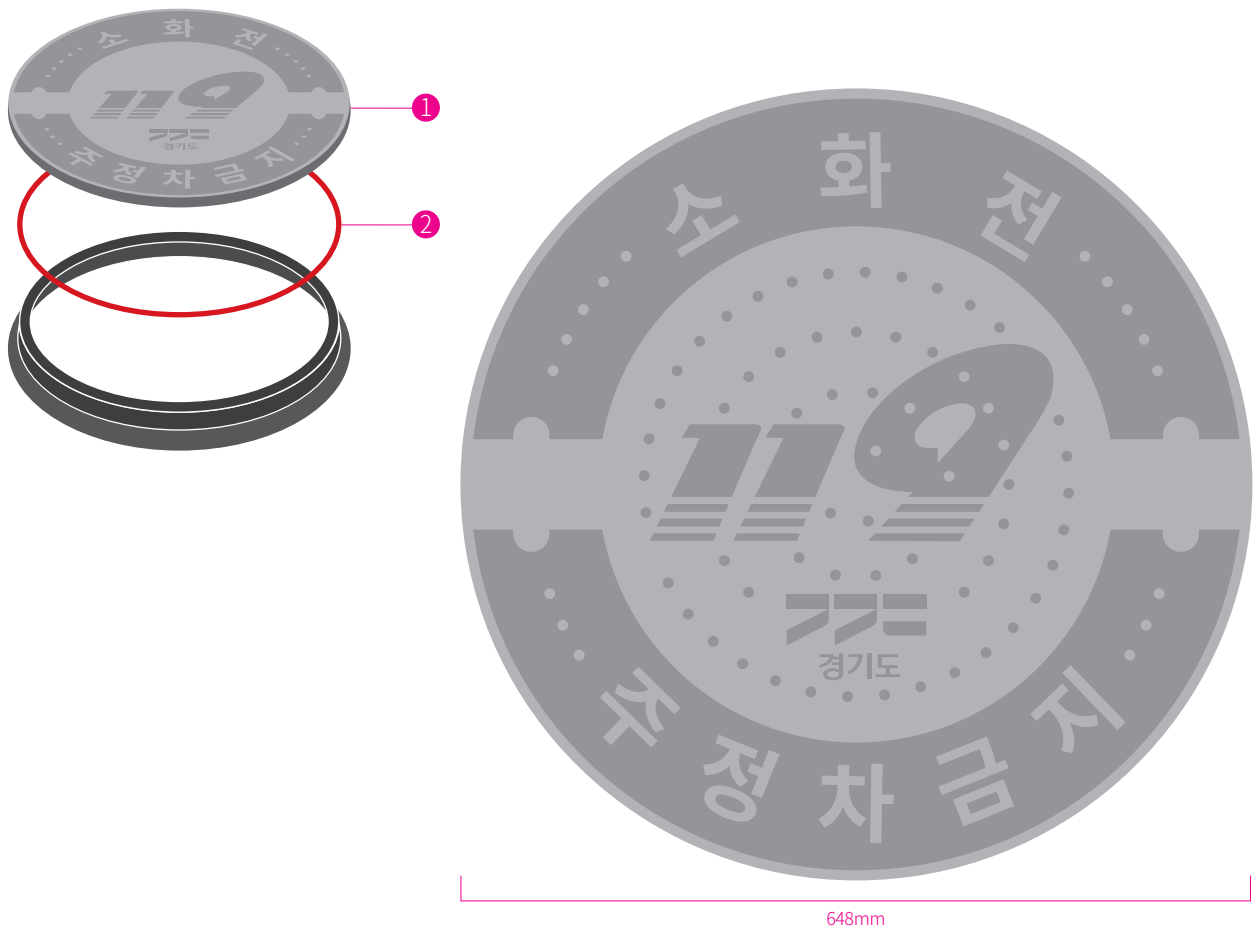
지정컬러

황색: CMYK(0, 20, 100, 0)
적색: CMYK(0, 100, 100, 10)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 소화전
Signage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기본법을 따른다. 법령 및 매뉴얼에 지정된 규격·표기를 준수하여 혼동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필요 시 채색 없이 음각처리만 하여 사용 가능하다.

적용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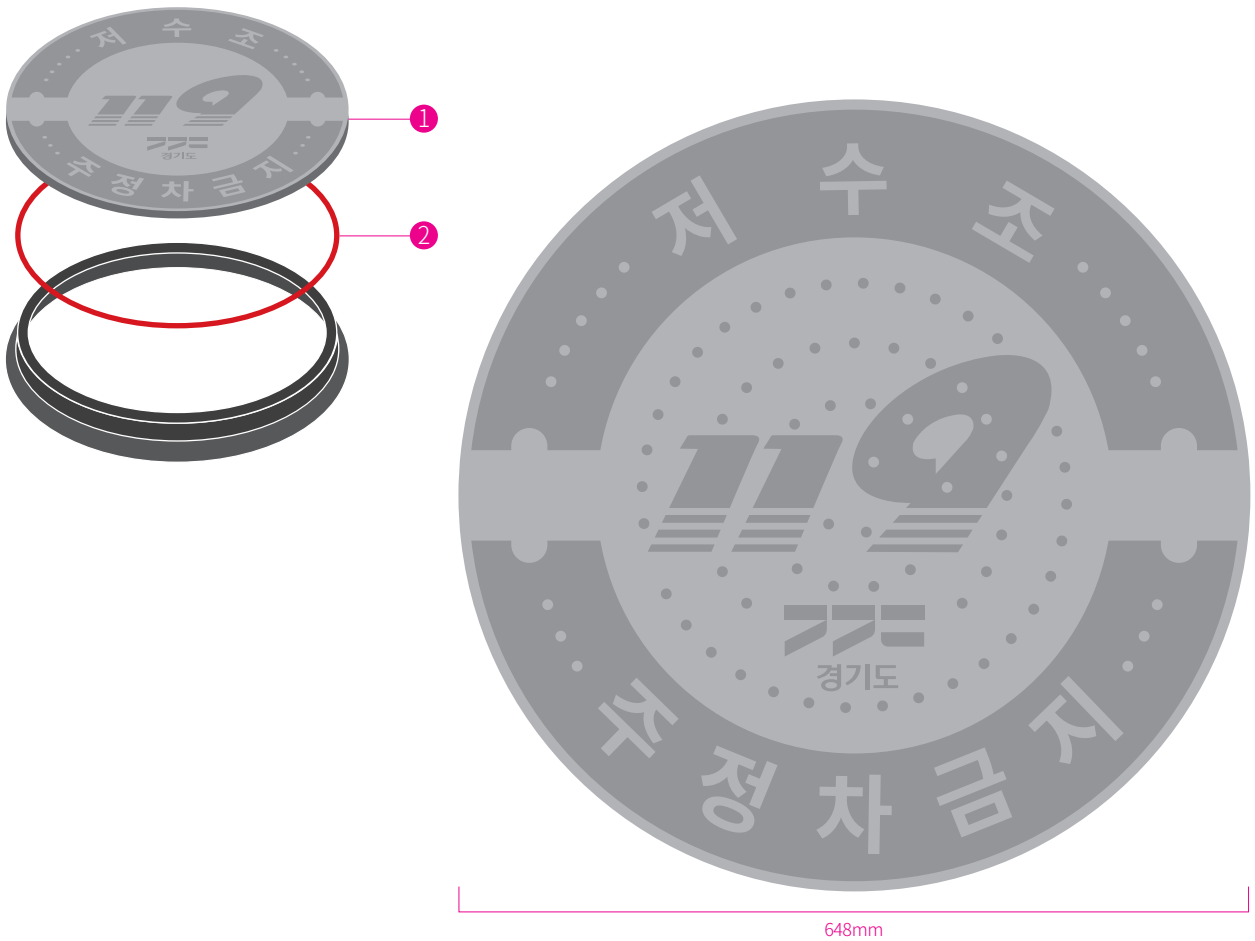


- 규격
- ① 맨홀 뚜껑
 - ② 소음침하방지패드

지하식 소방용수표지 - 저수조
Signage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기본법을 따른다. 법령 및 매뉴얼에 지정된 규격·표기를 준수하여 혼동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필요 시 채색 없이 음각처리만 하여 사용 가능하다.

적용예



규격

- 1 맨홀 뚜껑
- 2 소음침하방지패드

지상식 소방용수표지 Signage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판의 경우 소방기본법 및 교통약자법을 따르며, 소속 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부착한다. 법령 및 매뉴얼에 지정된 규격·표기를 준수하여 혼동이 없도록 설치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구는 지양하며, 가능한 경우 양면 설치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작방법

- 1 반사 테이프 또는 반사 스티커

지정컬러

청색: CMYK(100, 80, 0, 0)
적색: CMYK(0, 100, 100, 10)
황색: CMYK(0, 20, 100, 0)